

도안 우미린 트리셰이드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도안 우미린 트리셰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https://ddt.lynn.co.kr/>)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도안 우미린 트리셰이드 홈페이지(<https://ddt.lynn.co.kr/>)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개관 이후라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수칙, 정부정책 등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https://ddt.lynn.co.kr/>)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니,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2.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사전예약하신 분께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유선상으로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더라도 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강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이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인원,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과 병행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 전화(042-541-1009)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10. 14.입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유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 교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때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229호(2019.12.16.)」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2021.10.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1.10.14)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거주)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 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 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불인정 되며 기타 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할(2018.12.11.) 이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할(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 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 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 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가입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 인증서 또는 ④KB 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 인증서	KB 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 지원) 민간임대	○	○	○	○
APT 무순위 / 잔여 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 자격과 입주자자촉 요건의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 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때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 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확대 요청)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ddt.lynn.co.kr/)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했을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여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 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 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 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 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2.10.24. (월)	2022.10.25. (화)	2022.10.26. (수)	2022. 11. 03 (목)	2022. 11. 05 (토)~11 (금)	2022. 11. 14 (월)~18 (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접수 (10:00~16:00)	방문 체결 (10:00~16:00)
장 소	▪ 사업주체 건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 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때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 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 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때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센터 - 31296호(2022. 10. 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산 27-1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최고 38층 11개 동 총 1,754세대 중 일반분양 1,375세대 [특별공급 659세대(기관추천 154세대, 다자녀가구 137세대, 신혼부부 219세대, 노부모부양 40세대, 생애 최초 109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 ■ 입주 시기 : 2026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 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709	01	84.9558A	84A	84.9558	28.9342	113.8900	68.2460	182.1360	52.6464	488	116	44	88	13	44	305	187	18	
				84A1	84.9558	28.9342	113.8900	68.2460	182.1360	52.6464	4									
		02	84.7620B	84B	84.7620	29.2137	113.9757	68.0903	182.0660	52.5263	80	9	16	31	5	16	77	67	4	
				84B1	84.7620	29.2137	113.9757	68.0903	182.0660	52.5263	64									
		03	84.7141C	84C	84.7141	30.3359	115.0500	68.0518	183.1018	52.4967	104	11	18	38	5	18	90	82	7	
				84C1	84.7141	30.3359	115.0500	68.0518	183.1018	52.4967	68									
		04	84.7482D	84D	84.7482	29.5123	114.2605	68.0792	182.3397	52.5178	287	18	31	62	9	31	151	136	10	
		05	104.8399A	104A	104.8399	34.3524	139.1923	84.2191	223.4114	64.9685	71	0	8	0	2	0	10	61	2	
		06	104.7582B	104B	104.7582	35.7580	140.5162	84.1535	224.6697	64.9178	71	0	8	0	2	0	10	61	2	
		07	123.6902A	123A	123.6901	40.3669	164.0570	99.3617	263.4187	76.6498	120	0	12	0	4	0	16	118	4	
				123A1	123.6901	40.3669	164.0570	99.3617	263.4187	76.6498	14									
		08	173.8286P	173P	173.8286	61.8938	235.7224	139.6385	375.3609	107.7202	2	0	0	0	0	0	0	2	0	
		09	201.5638P	201P	201.5638	69.0991	270.6629	161.9186	432.5815	124.9075	2	0	0	0	0	0	0	2	0	
합 계												1,375	154	137	219	40	109	659	716	47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이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 관련 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하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하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은 필로티를 제외한 1층 및 필로티가 있는 타입은 2층 세대를 배정하였음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고상 주택형	84.9558A	84.7620B	84.7141C	84.7482D	104.8399A	104.7582B	123.6902A	173.8286P	201.5638P
약식표기	84A, 84A1	84B, 84B1	84C, 84C1	84D	104A	104B	123A, 123A1	173P	201P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 시 (입주 지정 기간 내)
										계약 시	2023.05.22.	2023.12.20.	2024.07.22.	2025.02.20.	2025.07.21.	2026.01.20	
84.9558A	84A	488	102동(1,2,3)	20층이상	224	270,049,182	398,250,818		668,300,000	66,830,000	66,830,000	66,830,000	66,830,000	66,830,000	66,830,000	66,830,000	200,490,000
			103동(1,2,3)	10~19층	140	264,634,459	390,265,541		654,90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65,490,000	196,470,000
			104동(2,3,5)	5~9층	69	259,260,145	382,339,855		641,600,000	64,160,000	64,160,000	64,160,000	64,160,000	64,160,000	64,160,000	64,160,000	192,480,000
			107동(3)	4층	16	253,845,423	374,354,577		628,20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62,820,000	188,460,000
			108동(2,3)	3층	15	248,430,700	366,369,300		614,80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61,480,000	184,440,000
			109동(2,3)	2층	18	243,056,386	358,443,614		601,500,000	60,150,000	60,150,000	60,150,000	60,150,000	60,150,000	60,150,000	60,150,000	180,450,000
			110동(2,3)	1층	6	237,641,664	350,458,336		588,10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176,430,000
	84A1	4	104동(2)	20층이상	4	272,716,135	402,183,865		674,90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67,490,000	202,470,000
84.7620B	84B	80	101동(4)	20층이상	37	268,514,127	400,285,873		668,800,000	66,880,000	66,880,000	66,880,000	66,880,000	66,880,000	66,880,000	66,880,000	200,640,000
			102동(5)	10~19층	22	263,134,208	392,265,792		655,40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65,540,000	196,620,000
			103동(5)	5~9층	9	257,794,439	384,305,561		642,10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64,210,000	192,630,000
			105동(5)	4층	3	252,414,521	376,285,479		628,70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188,610,000
			106동(4)	3층	5	247,034,602	368,265,398		615,30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61,530,000	184,590,000
			108동(5)	2층	4	241,654,684	360,245,316		601,90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60,190,000	180,570,000
			84B1	64	101동(4)	20층이상	23	271,163,937	404,236,063		675,400,000	67,540,000	67,540,000	67,540,000	67,540,000	67,540,000	67,540,000
	102동(5)	10~19층	26	265,824,168	396,275,832		662,10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198,630,000	
84.7141C	84C	104	103동(4)	5~9층	15	260,444,249	388,255,751		648,700,000	64,870,000	64,870,000	64,870,000	64,870,000	64,870,000	64,870,000	64,870,000	194,610,000
			102동(4)	20층이상	41	268,894,555	389,305,445		658,20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65,820,000	197,460,000
			103동(4)	10~19층	30	263,542,809	381,557,191		645,10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64,510,000	193,530,000
			104동(4)	5~9층	16	258,150,211	373,749,789		631,90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63,190,000	189,570,000
			105동(4)	4층	5	252,757,613	365,942,387		618,700,000	61,870,000	61,870,000	61,870,000	61,870,000	61,870,000	61,870,000	61,870,000	185,610,000
			106동(3)	3층	3	247,405,868	358,194,132		605,60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60,560,000	181,680,000
			108동(4)	2층	7	242,013,270	350,386,730		592,40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59,240,000	177,720,000
	1층	2	236,620,671	342,579,329		579,20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57,920,000	173,760,000			
	84C1	68	101동(3)	20층이상	34	271,550,001	393,149,999		664,70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66,470,000	199,410,000
	102동(4)	10~19층	24	266,198,255	385,401,745		651,600,000	65,160,000	65,160,000	65,160,000	65,160,000	65,160,000	65,160,000	65,160,000	65,160,000	195,480,000	
	103동(4)	5~9층	10	260,805,657	377,594,343		638,40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63,840,000	191,520,000	
84.7482D	84D	287	107동(4,5)	20층이상	135	269,199,898	379,200,102		648,400,000	64,840,000	64,840,000	64,840,000	64,840,000	64,840,000	64,840,000	64,840,000	194,520,000
			108동(1)	10~19층	83	263,802,615	371,597,385		635,400,000	63,540,000	63,540,000	63,540,000	63,540,000	63,540,000	63,540,000	63,540,000	190,620,000
			109동(1,4,5)	5~9층	44	258,405,331	363,994,669		622,40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186,720,000
			110동(1,4,5)	4층	6	253,049,565	356,450,435		609,500,000	60,950,000	60,950,000	60,950,000	60,950,000	60,950,000	60,950,000	60,950,000	182,850,000
			111동(4,5)	3층	8	247,652,281	348,847,719		596,50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59,650,000	178,950,000
			2층	10	242,254,998	341,245,002		583,50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58,350,000	175,050,000	
			1층	1	236,899,232	333,700,768		570,60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171,180,000	
104.8399A	104A	71	107동(2)	20층이상	35	332,669,909	455,754,628	45,575,463	834,0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83,400,000	250,200,000	
111동(2)	10~19층	20	326,008,534	446,628,606	44,662,860	817,30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81,730,000	245,190,000		

				5~9층	10	319,347,158	437,502,584	43,750,258	800,60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80,060,000	240,180,000
				4층	2	312,685,782	428,376,562	42,837,656	783,90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78,390,000	235,170,000
				3층	2	306,024,406	419,250,540	41,925,054	767,20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76,720,000	230,160,000
				2층	2	299,402,919	410,179,165	41,017,916	750,60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75,060,000	225,180,000
104.7582B	104B	71	107동(1) 111동(1)	20층이상	35	332,408,889	433,173,737	43,317,374	808,900,000	80,890,000	80,890,000	80,890,000	80,890,000	80,890,000	80,890,000	80,890,000	242,670,000
				10~19층	20	325,751,671	424,498,481	42,449,848	792,700,000	79,270,000	79,270,000	79,270,000	79,270,000	79,270,000	79,270,000	79,270,000	237,810,000
				5~9층	10	319,094,453	415,823,225	41,582,322	776,50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77,650,000	232,950,000
				4층	2	312,478,328	407,201,520	40,720,152	760,40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76,040,000	228,120,000
				3층	2	305,821,110	398,526,264	39,852,626	744,20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74,420,000	223,260,000
				2층	2	299,163,891	389,851,008	38,985,101	728,0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218,400,000
123.6902A	123A	120	101동(1,2) 106동(1,2)	20층이상	48	392,498,686	535,910,286	53,591,028	982,0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98,200,000	294,600,000
				10~19층	40	384,624,730	525,159,336	52,515,934	962,300,000	96,230,000	96,230,000	96,230,000	96,230,000	96,230,000	96,230,000	96,230,000	288,690,000
				5~9층	20	376,790,744	514,462,960	51,446,296	942,700,000	94,270,000	94,270,000	94,270,000	94,270,000	94,270,000	94,270,000	94,270,000	282,810,000
				4층	4	368,956,758	503,766,584	50,376,658	923,100,000	92,310,000	92,310,000	92,310,000	92,310,000	92,310,000	92,310,000	92,310,000	276,930,000
				3층	4	361,082,803	493,015,634	49,301,563	903,40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90,340,000	271,020,000
				2층	4	353,248,817	482,319,257	48,231,926	883,80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88,380,000	265,140,000
	123A1	14	101동(2), 106동(2)	20층이상	14	396,415,679	541,258,474	54,125,847	991,800,000	99,180,000	99,180,000	99,180,000	99,180,000	99,180,000	99,180,000	99,180,000	297,540,000
173.8286P	173P	2	107동(1),111동(1)	20층이상	2	541,625,115	1,079,522,623	107,952,262	1,729,100,000	172,910,000	172,910,000	172,910,000	172,910,000	172,910,000	172,910,000	172,910,000	518,730,000
201.5638P	201P	2	101동(1),106동(1)	20층이상	2	628,044,128	1,233,959,884	123,395,988	1,985,400,000	198,540,000	198,540,000	198,540,000	198,540,000	198,540,000	198,540,000	198,540,000	595,62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조정하여 주택형별, 층별, 동별, 호수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형 84A1, 84B1, 84C1, 123A1은 별도로 선택하실 수 없고 84.9558A, 84.7620B, 84.7141C, 123.6902A 선택시 청약 담당 기관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 기한 내에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 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경계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작적 사유로 인하여 대출한도가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능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 지정 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불가),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שה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 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신청을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써,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A1	84B, 84B1	84C, 84C1	84D	104A	104B	123A, 123A1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2	3	5	-	-	-	18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	1	2	-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1	2	-	-	-	7
	중소기업 근로자		3	1	2	2	-	-	-	8
	장애인	대전광역시	4	1	1	3	-	-	-	9
		충청남도	2	1	1	1	-	-	-	5
		세종특별자치시	2	1	1	1	-	-	-	5
	시책추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3	1	1	2	-	-	-	7
	철거민	도안대로	45	-	-	-	-	-	-	45
		사업부지	43	-	-	-	-	-	-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4	16	18	31	8	8	12	137
신혼부부 특별공급			88	31	38	62	-	-	-	21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	5	5	9	2	2	4	40
생애 최초 특별공급			44	16	18	31	-	-	-	109
합 계			305	77	90	151	10	10	16	65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형 84A1, 84B1, 84C1, 123A1 은 별도로 선택하실 수 없고 84.9558A, 84.7620B, 84.7141C, 123.6902A 선택 시 청약 담당 기관 프로그램으로 추첨 배정됩니다.
-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와 소득 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 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 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 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주식회사 부원건설의 이주 대책으로 사전 확정 통지 받은 자(대전광역시장 추천자제외)의 경우 현재 철거주택 소유자(소유주택이 향후 주식회사 부원건설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되어 무주택이 될 경우)이면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해당 철거주택이 주식회사 부원건설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철거주택 이외 상기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이는 특별공급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납입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으며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또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 전원(대전광역시장 추천자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본문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 납부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 납부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 분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의 범위] : 15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전, 세종,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철거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에 따라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그 사업에 따른 부수 사업에서 이주 대책으로 사전 확정 통지 받은 자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추천한 자	대전광역시청 도시개발과
시책추진 해당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4호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10호」로 정한 자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철거민 특별공급 관련 유의사항**

-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1-38,대로3-115,대로3-116)]의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비용이 확정되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준공시점에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정산 및 환급 예정입니다.

또한 위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 중 계약체결을 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하되, 상속은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자(당첨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 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 해당 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임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으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토지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7.01.~ 12.31.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자책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지속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지촉 순위별 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시, 충청남도 거주자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천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촉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천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촉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총별·동별·호별·항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총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 10. 2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건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정보취약 계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해당/기타)	2022. 10. 25(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2순위	2022. 10. 26(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 14: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금융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유효한 금융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무주택 입증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본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본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복무확인서	본인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신청자 구비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신청자 구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임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임증서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구비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세무서)	신청자 구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비사업자 확인각서 위임장	본인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신청자 구비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소형·자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배우자 세대원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 내역 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 분에 한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입증서 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피부양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신청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자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청약자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간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 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정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정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정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제57조 제8항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V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검수 (공급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2.11.03.(목) - 확인방법 - 청약Home(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2022.11.05.(토) ~ 11.11.(금) (10:00 ~ 16:00) - 장소: 도안 우미린 트리셰이드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일반공급 구비서류 지참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별도 안내 예정	- 일시: 2022. 11. 14 (월)~18 (금)(10:00 ~ 16:00) - 장소: 도안 우미린 트리셰이드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흥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쏜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03(목) ~ 2022.11.12(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0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별도 안내예정	2022.11.05(토) ~ 2022.11.11.(금) 7일간 (10:00 ~17:00)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제출 장소 : 도안 우미린 트리셰이드 건본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사전방문예약제 운영(예정) : 홈페이지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검증서류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건본주택을 방문, 청약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로 당첨포기로 처리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VI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2.11.14(월) ~ 2022.11.18(금) / 5일간 (10:00 ~ 16:00)	건본주택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042-541-1009	일정 및 시간 변동시 별도 공지

-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전자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를 구매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장수납 불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 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6억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하나은행	621-910042-24404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후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계약체결 시 우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우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고,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시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시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시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시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공급대금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보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도금대출 알선이 불가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시 및 보상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7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I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중도금 (10%)	잔금(80%)
		계	계약시	2023-05-22	입주지정일
84.9558A	84A	16,800,000	1,680,000	1,680,000	13,440,000
	84A1	20,700,000	2,070,000	2,070,000	16,560,000
84.7620B	84B	19,100,000	1,910,000	1,910,000	15,280,000
	84B1	23,000,000	2,300,000	2,300,000	18,400,000
84.7141C	84C	16,000,000	1,600,000	1,600,000	12,800,000
	84C1	19,900,000	1,990,000	1,990,000	15,920,000
84.7482D	84D	17,800,000	1,780,000	1,780,000	14,240,000
104.8399A	104A	21,200,000	2,120,000	2,120,000	16,960,000
104.7582B	104B	22,100,000	2,210,000	2,210,000	17,680,000
123.6902A	123A	22,800,000	2,280,000	2,280,000	18,240,000
	123A1	26,900,000	2,690,000	2,690,000	21,520,000
173.8286P	173P	34,000,000	3,400,000	3,400,000	27,200,000
201.5638P	201P	32,000,000	3,200,000	3,200,000	25,6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므로 확장형의 우물천정, 아트월타일 등 세대 인테리어, 평면구성, 제품품목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석재,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제 사용되는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관련자료 미확인등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 선택 시 공간 활용 및 세대 사용에 있어 확장형 대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와 인접한 확장 세대의 경계벽에는 발코니 비확장 세대 벽면 및 천정쪽으로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용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우수등의 유입에 따른 배수구가 추가로 설치로 인해 하부세대에는 실내에 배수를 위한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확장구간에 덕트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용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주방 상판, 주방가구등 마감재는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나 약세서리 등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일반가구/시스템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는 발코니 안쪽 내벽에 설치되며, 확장형 세대 대비 창호의 위치 및 크기, 종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벽에는 창호 및 실외기 그릴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외벽의 개구부 중 콘크리트 난간 없이 오픈된 부위는 세대 타입 및 층수에 관계 없이 철재난간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는 층,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콘크리트의 건조과정에 따라 입주시 일정기간 확장 부위에 결로 등이 발생 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함으로 인해 개인별로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과 습도상태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현장의 외부 마감은 입면CG 및 모형과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전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를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이 가능한 발코니 중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생기는 침실(거실, 주방)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하나은행	621-910042-26704	코리아신락(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확장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의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시 확장시 추가선택품목 선택가능)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에어컨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3.05.22.)	잔금 (입주 시)	비고
84A/A1, 84B/B1	3대	거실, 안방, 주방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제 조 사 : 삼성전자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6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0,200,000	1,020,000	1,020,000	8,160,000	
84C/C1, 84D	3대	거실, 안방, 주방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104A	3대	거실, 안방, 주방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6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0,500,000	1,050,000	1,050,000	8,400,000	
104B	3대	거실, 안방, 주방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9,100,000	910,000	910,000	7,280,000	
123A, 123A1	3대	거실, 안방, 주방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9,600,000	960,000	960,000	7,680,000	
	6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173P	3대	거실, 안방, 주방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7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13,500,000	1,350,000	1,350,000	10,800,000	
201P	3대	거실, 안방, 주방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5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11,400,000	1,140,000	1,140,000	9,120,000	
	7대	거실, 안방,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13,900,000	1,390,000	1,390,000	11,120,000	

■ 냉매배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3.05.22.)	잔금 (입주 시)	비고
84A/A1, 84B/B1	주방특화 선택	침실1+침실2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주방특화 미선택	침실1+침실2+침실3 (알파룸)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C/C1, 84D	-	침실1+침실2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104A	-	침실1+침실2+침실3 (알파룸)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104B		침실1+침실2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123A/A1	-	침실1+침실2+침실3 (알파룸)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173P	-	침실1+침실2+침실3+침실4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201P	-	침실1+침실2+침실3+침실4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 냉매배관 옵션은 ‘시스템에어컨 미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3대’ 선택시에만 가능합니다.

■ 가전/가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명	84A/A1	84B/B1	84C/C1	84D	104A	104B	123A/A1	173P	201P	비고
현관	충문	1,800,000	1,9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거실	바닥타일(거실+주방)	1,400,000	1,400,000	1,500,000	1,400,000	1,500,000	1,500,000	1,800,000	2,700,000	2,800,000	
	전동커튼 레일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전동커튼 레일(2열)
	조명특화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2,100,000	2,0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인공지능 청정환기시스템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2,600,000	2,600,000	
주방	고급 주방특화	6,800,000	6,800,000			7,200,000		9,000,000			1. 엔지니어드스톤(상판, 벽부, 아일랜드상판) 2. 주방발코니 팬트리 3. 주방수납장 4. 매립형 콘센트 5. 다용도실 고급형선반 6. 주방등 ※ 123A/A1타입 상동 + 알파룸 + 슬라이딩 도어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주방벽체			2,300,000	1,900,000		1,800,000		2,100,000	2,800,000	※ 173P, 201P타입 : 보조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추가 적용
	냉장고장 패키지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삼성 컨버터블 냉장고[냉장2칸+냉동 또는 냉장+냉동+김치냉장고] + 냉장고장
	광파오븐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삼성
	인덕션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1,100,000	삼성
	식기세척기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삼성
침실	고급형 안방드레스룸	3,300,000	3,300,000	3,300,000	7,900,000	4,400,000	9,600,000	5,000,000			
	안방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3,400,000	3,400,000	3,400,000		3,600,000		3,600,000			※ 84A, 84B 84C, 104A, 123A 선택가능
	안방 불박이장 (드레스룸형)	4,900,000	4,900,000	4,900,000				5,100,000			※ 84A1, 84B1, 84C1, 123A1 선택가능
	침실 분리형 불박이장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1개소기준 단가
	침실 통합형 불박이장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침실1, 2 통합형 키큰장
욕실	비데(공용욕실)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거치형 비데
	복합환풍기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개소기준 단가

-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가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계약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선택 불가합니다.
- 계약일 이후 추가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포함)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중도금 대출자서 기간 등)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시공상의 사유로 불가합니다.(아파트 공급계약시 계약한 추가선택품목의 취소는 불가)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침실3(알파룸) 등)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는 견본주택의 84A타입과 123A타입의 마감을 준용하며, 85㎡이하 타입은 84A타입, 85㎡초과 타입은 123A타입과 같은 마감재의 사양으로 진행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 길이, 가구의 입면 및 도어 개폐 방향, 가구/마감재 색상의 조합,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등이 상이하며, 분양자료(VR, 이형모형, 분양 카달로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기본형에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의 수량, 위치 등이 기본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옵션 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만 시공되며 기타 침실의 냉매배관은 추가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함)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는 대피공간과 연동하여 설치되므로 실외기 공간에 별도의 선반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선반등의 설치로 인해 환기면적등의 부족이 발생시 실외기 화재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히 실외기/대피공간에는 실외기외에 아무것도 비치하여서는 안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법적물질적 손해는 계약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84B/B1타입 중문은 설계상 슬라이딩도어 형태의 중문이 설치가 불가하여, 견본주택 전시제품과 달리 여닫이 형태로 시공 예정입니다.
- 인덕션 미선택시 기본 3구룩담이 설치됩니다.

- 고급주방특화는 주방과 알파룸이 가변형태인 공간에 한하여 제공되며 해당 옵션 선택시 알파룸이 주방공간/팬트리공간(일부 소형알파룸)등으로 변경되므로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자재(주방상판,주방벽,다용도실 시스템장등), 조명(건축화조명), 우물천정등 인테리어, 제공가전(아일랜드 콘센트) 등이 변경되어 설치되므로 견본주택내 설치된 POP등과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냉장고장내 빌트인냉장고 인출식창고형서랍, 인덕션,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빌트인가전은 본 옵션과 무관하므로 제공품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빌트인 가전 미 선택시 가구로 마감됩니다.
- 냉장고장패키지 미선택시 냉장고, 김치냉장고의 거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며 실제 제품거치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돌출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은 각 실의 규격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합형 침실의 불박이장은 침실통합형 선택세대에 한하여 옵션선택가능하므로 옵션선택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침실통합형 선택시, 침실1의 벽지로 시공되며, 콘센트 위치 변경, 온도조절기 통합, 침실문 1개소 통합되어 시공됩니다
- 안방 불박이장은 슬라이딩가구로 설치되나, 안방측면발코니 확장세대(84A1, 84B1, 84C1, 123A1)의 안방불박이장은 시스템장+슬라이딩 도어로 제공되니 옵션항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급형 안방드레스룸은 확장옵션항목인 부부침실 드레스룸의 프리미엄 마감품목으로 벽체 부착형행거+부착형판넬+조명행거로 구성되며 설치시 시공면당 27mm 두께로 추가적인 마감이 설치되므로 기존 드레스룸보다 공간이 작아지며 미선택시 중간 포스트 형태의 기본 시스템장이 설치됩니다.
- 84D타입은 고급형 안방드레스룸 선택시, 드레스룸 크기가 변경되며, 안방 불박이장이 추가로 일괄시공됩니다.
- 104B타입은 고급형 안방드레스룸 선택시, 드레스룸 크기가 변경되며, 안방 불박이장과 슬라이딩도어가 추가로 일괄시공됩니다.
- 거실 조명특화의 경우, 일부 시공형태에 따라 긴결부위에 빛이 쏠수 있으며, 미선택시 견본주택 POP에 고시된 등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 설치된 PO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커튼 레일은 견본주택 시연을 위해 1열로만 설치되었으며 본계약시 걸커튼과 속커튼을 설치할 수 있도록 2열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바닥타일은 거실과 복도 주방에 한하여 시공되며, 본 시공시 견본주택과 타일나누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질재(강마루등)와 만나는 구간에는 재료분리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타일의 경우 주방에 설치시 그릇등의 파손이 쉬우며 비산할수 있고 물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부주의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념하신 후 계약하셔야 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옵션제공자가 지지 않습니다.
- 123A타입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는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바닥레일이 돌출되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이물질 등이 낄 수 있으며 미설치시에는 가구설치를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복합환풍기 선택시, 점검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냉매배관 선택시 벽걸이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에어컨 설치를 위한 관이 설치되며 매립된 동관의 경우 최초 설치시의 하자에 한하여 그 하자여부를 판단하며 향후 배관길이 부족으로 인한 용접등의 사용으로 냉매누수등의 하자는 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공지는 청정환기시스템 선택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전은 홈IOT 협약된 삼성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제품 외 타사제품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구분		납부일정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2023-05-22)	잔금 (입주예정일)
621-910042-27304 하나은행	코리아신탁(주)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80%

- 상기 계좌는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추가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결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의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준합니다.

I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 당 사업장은 21.11.1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어 22.4.26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시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최종도면은 건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ddt.lynn.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인하여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의 발생,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도안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 27, 28블록을 통합하여 시행한 2-3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토지확보, 주변 도로개발 등을 시행하는 사업지입니다. • 도안 2기 신도시의 토지이용 계획은 각 사업자의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를 포함한 공원 및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각 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 분양 당시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주체 및 기관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인허가, 예산편성 등의 결과에 따라 분양 시 홍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 시기는 아파트 입주 예정 시점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범위 이외의 단지 접속도로,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지연에 따라 사용승인이 연기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통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상 및 각종 금융처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안 2기 신도시 내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공원, 학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각 민간사업자, 조합, 지자체, 기관이 각자 그 역할을 나누어 계획하고 설치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 또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따른 귀책이 없습니다. • 도안 2기 신도시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준비 중으로 본 사업지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타 사업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지연·취소, 노선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및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 중 당 사업지는 단지 남측/북측도로 전폭, 단지 서측도로 반폭을 시공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향후 인허가청과의 협의경과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거나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으므로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처리결과 및 준공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용도별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에 비치된 홍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피해 여부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현재 보행가로의 패턴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바닥 패턴, 사인물, 식재 등의 계획이 조정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의 공원 등의 계획은 대전광역시의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의 위치에 따라 동일타입이라도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홍보물, 비치된 도면을 확인 후 관계자와 상담하시어 해당 세대의 컨디션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청자가 계약체결 시 건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 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건본주택, 준공 도서,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도서, 공사 시방서(착공 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성 후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건본주택의 모형에 설치된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 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따라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 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등은, 실제 시공 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부에는 옹벽(산벽옹벽 등)등이 설치되며, 보행로와 인접한 부위일 경우 그 높낮이 차가 발생하는 부위에 안전을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되며, 그 외 경계에 보행이 금지되는 산벽옹벽 등은 조경 등으로 차폐할 예정이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자의에 의한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번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및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 등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입주자 모임을 통하여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 및 그 관계자에게 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 사양, 부대 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 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데 모든 이용자 상호 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주차 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매 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③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 홈페이지<ddt.lynn.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 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 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인도의 일부 구간은 아파트 대지 경계선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관계 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학교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감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유성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계약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학생 배정은 개발상황 및 입주 시기, 교육정책 등을 기준으로 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될 계획입니다.

	• 학교설립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 일자와 개교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교육 시설은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입주 시기 조정 및 관할 교육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일부 보류·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교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당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 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는 설립 예정이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개발지구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건, 학생 유입 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이 지연, 변경되거나 설립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설 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 배치계획, 교육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 학교설립 지연시 입주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설립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개발계획 변경, 교육청 심의과정 등에 따라 초교, 중교, 고교 예정부지 등은 위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변 여건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 지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 또는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등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상업시설, 주차장시설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와 소음 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자 협의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 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2동, 105동, 106동, 110동, 111동 옥상층 / 지하 3층 104동, 105동 주변현룸 / 지하 2층 105동, 108동 주변현룸 / 110동 111동 사이 지하주차장 주변현룸 / 지하 1층 주차장 110동 111동 사이 지하주차장 주변현룸 • 단지 내 도시가스 인입에 따라 가스정압기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103동과 104동 사이에 설치 예정으로 해당동 당첨자는 계약전 필히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에는 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차장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측 차량출입구에는 상가이용차량과 아파트입주인이 진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며 이로인해 혼잡한 교통상황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주행 또는 보행시 주의를 요합니다. • 맘스데스크를 이용한 학원차량의 진입, 승·하차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 (교육 및 보호자 동행 등)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103동 북측 하단부에 인접한 면에는 상가 상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에 면한 서측도로에 버스정류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전시의 교통계획에 따라 버스정류장의 설치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나 운행 결정시 최단 동선체계로 103동 저층부와 인접한 상가 상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가대표회의 관리비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대표회의와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엘리베이터 운영비 부담 등 입주민대표회의 의결 등 동의를 전제로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은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입주민에게 있으므로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단지 북측의 주차장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용지확보계획에 따라 확보된 부지로, 일반에게 분양될 예정이며 분양 후 주차 빌딩 등의 신축에 따라 103동 104동과 일조, 경관 등의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체결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안 2기 신도시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 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정류장의 위치, 운영 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구역에 인접한 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구역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상업 용지, 공동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묘지, 혐오 시설, 저류시설, 전신주, 철탑, 비닐하우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부 여건	• 본 아파트 내의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상가가 위치한 복측의 출입구는 상가이용자와 입주민(주차장 출입/학원 차량 출입)이 동시에 사용함에 따라 혼잡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공급 전에 아파트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개발 경과, 조망권, 향후 각종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복측의 중심상업지 개발 및 단지 인접된 주차장 용지의 개발로 인해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에 따른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상가 저면에는 부지 내 우수활용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지구 내 저류조가 신설 시에도 철거되거나 이설되지 않으니 이점 확인 후 청약 또는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우·오수는 단지 서측도로의 개발상황에 따라 연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나 주변단지의 개발이 미흡할 경우 노선의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측부는 광로(약 50m) 에 면하고 있으며 도안대로(가칭)의 준공 및 운용에 따라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약 15m)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인접 세대(109,110,111동)의 경우, 일조, 조망, 통풍 등에 불리 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 모형, 홍보물, 홈페이지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법」 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을 시행하고, 법정 기준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가 소음저감 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안대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설치 예정 구간으로 철도의 운행을 위한 시설물 및 정거장 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 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 폭, 차선수,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 마감, 신호체계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의 개발과정에서 주변 개발이 미진할 경우 안전등을 위해 옹벽/사면처리 등 추가적인 토목 및 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104, 105, 106동과 107, 108동을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행가로는 도안지구 내 상업지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공성의 보행가로서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생활권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민 외 외지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입주민의 권익 보호 등의 사유로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의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 층에 조정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기계 전기실 및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계약체결일 이후 법에서 정한 계약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 변경,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변경 진행하며 향후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계획 중 교통통제 필요성, 효율적인 사용, 측량 결과 등 합리적 사유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녹지면적 등은 축소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진행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경사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특성으로 단지 내/외부에 높낮이 차가 다소 발생하여, 이를 위해 단지 내 다수의 계단과 공용 승강기가 설치되며, 각 주거동 및 시설물의 접근 및 활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 통행에 있어 그 동선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외관 디자인 색채, 지하주차장 색채 등은 대전광역시의 경관심의를 득하여 확정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현재 기준보다 이미지 제고와 특화를 위해 단지 내외부의 디자인이나 마감이 상향하여 제공되는 경우 대전시의 입주자초청행사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상향하여 조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별도로 이의 제기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동 번호등은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구조 안전심의, 에너지사용 계획 협의 결과 조건, 관계기관 심의 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 동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 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허가 시 결정된 사항이 법적 이상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부지는 도로 간의 높이차가 큰 단지로 일부 주동의 경우 도로보다 낮게 배치되어 차량 등의 전조등 등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계약 전 모형을 확인하시어 피해 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 외부 옥상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운영에 따라 실외기, 상가용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구간 중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정차하는 위치의 경우 비상 차량 정차 위치 등 별도 표식이 포장 면에 표기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상의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 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 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 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 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 복리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대, 산책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 단지 내 주 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의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주동 및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랙통,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 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용역 등 보행로와 인접한 경계부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유지관리 의무는 본 단지에 있습니다. • 단지 상가와 인도와 상가 일부에는 주동과 간섭되는 우수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구역 내 홍수방지를 위한 우수저수조로 영구시설이며 저류조의 규모가 대형으로 부주의한 사용 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저수조의 사용으로 인한 일부 악취나 별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동	• 각 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정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7동, 111동의 경우 주차장 출입구와 세대 및 주동 출입구가 인접하여 소음, 매연, 야간조명 노출 등에 의한 환경권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와 주 출입구 문주 형태,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 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 형태 등의 계획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낮이 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레벨 차로 인해 주동 전면에서 출입하지 못하고 상부 레벨의 후면에서 진입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은 단지 출입구에서 지상을 통한 접근보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하는 동선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 때문에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은 인접한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등) 및 쓰레기보관소 등과 인접하여 채광 및 조망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시모형 및 분양홍보물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 주거공용면적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 배분한 값으로, 실제 각 타입별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에는 통풍을 위한 개폐창이 설치되나, 전 층에 설치되지 않고 5개 층마다 1개소씩 설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동별 세대 현관문과 인접한 승강기 홀의 계획이 상이 현관문과 승강기 문이 직접 마주 보거나 근접하여 프라이버시에 불리할 수 있으나 해당 계획의 조정은 불가하오니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배치, 조합, 층수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가 추가될 수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상 레벨 차로 인한 데크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각 주동별 근접한 지하 주차대수와 그 이용 동선에 있어 접근성 및 편의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도안대로 변에 면한 세대의 경우 슬라브가 돌출되어 시공되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내 그림자, 우천 시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과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전시 경관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세대(84A1, 84B1, 84C1, 123A1로 표기된 세대)의 발코니 돌출 면이 있으며 일부 구간만 연속되어 설치되며 별도의 자연 배수를 위해 구배 처리될 예정이나 비확장 세대가 발생 할 때 비확장 세대 발코니 양 측면으로 배수 슬라브가 시공되며 슬라브를 통해 외벽을 따라 물이 배수될 수 있으며 우수흡통 설치 시 미관의 저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세대	[공동사항] • 건분주택의 유닛트는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 품목을 전체적용한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유니트 모형 중 84A1, 123A1타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가 편리한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에는 없는 타입으로 본 시공 시에는 대청된 형태로 시공되오니 건본주택 확인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의 사양은 건본주택에 전시된 84A타입과 123A타입의 마감을 준용하며 84A타입은 85㎡ 이하 타입 전체에 적용되고, 123A 타입은 85㎡ 초과 타입 전체에 적용되나 타입에 따라 제품 품목에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내 단위 세대 모형,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최종도면을 기준으로 제작하여 전시된 것으로 분량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 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 시설 등을 비교하여 제품의 상황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주변 지역의 상품과 자세히 비교하신 후 선택하여 청약 또는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타입의 단위 세대라도 세대 간의 조건(층별, 층간 차이)에 따라 단열 두께의 변화, 서비스면적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의 성능확보를 위해 이로 인한 외벽 마감/ 창호의 형태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내부면적(또는 서비스면적)이 일부 조정되어 설치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전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향후 이의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위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 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 등의 유지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층과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 공용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저층 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등)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 세대는 기존 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 및 운목 설치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그 해당 시설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야외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 기준 2.3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류는 다용 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 가구, 욕실 가구 등의 가구류의 경우 경험, 서랍재,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재류 화장대 및 욕실 상판의 경우 자재 생산의 규격으로 인해 분절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동빨래 건조대 설치 시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빨래 봉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73P, 201P 타입에 설치된 테라스는 펜트세대에 귀속된 시설이 아니므로 테라스의 사용 시 주의를 요하며 과도한 사용(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방수층 파괴, 뒤통나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하부세대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173P, 201P 타입에 테라스가 설치된 세대의 하부는 외기에 노출로 인해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부 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관련 사항]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는 구조기준 및 마감 기준변동에 따라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으나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서비스면적의 차이는 미미하나 발코니 확장비는 해당 평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확장비에 변동은 없으므로 분양공고 시의 부분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간벽 및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예방을 위한 결로방지 페인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나 입주 초기 콘크리트 수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이 온도 차로 인해 창호, 벽체, 실리콘 부위 등에 맺히거나 곰팡이가
--	---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절기에도 약간 창호를 열어두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계약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시 설치되는 발코니 조명은 삭제되어 발코니 확장비에 계상되며, 침실조명이 침실의 중앙으로 위치 이동됩니다. • 다용도실에 전열교환기 장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마감 (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과 이로 인한 건축입면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다용도실 (비확장 발코니)에는 건본주택에 지급 품목으로 명기되어 전시되거나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납을 위한 시스템 선반 및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쪽으로 인하여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방의 비확장 발코니에는 입상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므로 우수배출에 대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우수 선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하자 등의 문제 여부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상부 세대 세탁 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 배관 입상, 수전 금구/액세서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건본주택에 미분할 되어있으나 본 시공 시 2분할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방충망은 고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 내 대피공간은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하부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이므로 형태의 변경이나 보행 간섭 등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과도한 물 사용 시 누수 및 방범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하 세대 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피난구실은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으며, 동일한 타입이라도 피난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릅니다. (층별 교차 시공) • 하향식 피난구는 하층에 필로티 또는 피트, 부대 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시공되지 않으며, 완강기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다용도실에 손세탁 수전이 설치되며 공간 제약상 다용도실 도어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부에 스톱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창호 관련 사항] • 건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건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외부 창호는 현대L&C의 제품으로 시공되었으며 본 시공 시 동일하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납시 제품의 단종, 시험성적 등에 따른 사양 조정 등에 의해 제품의 크기 및 두께, 재질,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 사양, 개폐 방향, 설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외부 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별도부착 사양으로 시공사에서 일괄 시공되며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미설치할 수 없습니다 • 손 끼임 방지 장치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찰소음, 하드웨어 상/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 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금속도어 중 방화성능을 요하는 도어는 그 성능의 만족을 위해 바닥에 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에만 설치되며 창호 중 한쪽면에만 설치됩니다. (거실 창은 양쪽끝 창호) •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창호의 경우 발코니 쪽에서 보았을 때의 창호의 면에는 별도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비/기계/전기/통신 관련사항] • 각 세대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입니다 •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전기분전반)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세대 유형,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안방,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가 되는 것에 대한 이동설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은 세대 타입, 옵션 선택에 따라 현관 신발장, 팬트리, 드레스룸, 안방 및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 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 관련 마감재의 제품 제한,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 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월 패드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간 영상통화만 제공됩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미 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는 다용도실에 설치되고, 이와 타입은 실외기실에 설치되어 각 설치공간 천장에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에 면한 실은 제품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의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벽체 하부에(스탠다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벽체 상부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기준) 기본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미시공되며 옵션가에 상계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123A, 123A1,173P, 201P의 부부욕실 카운터형 세면대의 경우 장하부에 세면대 배수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 매립 형태로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탕 분배기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 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승강기가 인접된 세대의 경우 진동 및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나 개인차에 따라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을 느낄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 인접 여부를 확인하신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 등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 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그에 따라 가스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기타 부속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하단은 마감되지 않으며 전선관/케이블 등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이 상황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부대 복리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사용의 편의 여부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데크 층을 포함한 지하에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층 등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려, 세대와 인접한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 1층 필로티 하부와 조경공간에 나누어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관련 법규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3동, 104동, 109동 북측 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에 따라 저층 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상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공간으로 구분되어 설치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 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 개시 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 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민을 위한 입주 지원센터,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임대 차비용 일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골프 연습장의 타석 수는 인허가 협의 등의 결과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타석 수 축소 및 배치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 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과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 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상세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 근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야 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 인접 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설치되는 무인택배함은 각 동거주세대를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지하 2층만 2.7m(차량 통행로에 한함)가 확보되어 있고 그 외 층은 2.3m(차량 통행로에 한함)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2,915대, 근린생활시설 61대 총 2,976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주차구획정비 등을 통해 그 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분리되어 입주민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북측 차량 출입구는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이 예상되며 인해 다소 혼잡이 예상되며 계약자/어린이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 형태, 주동 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단지내 경사차이로 인하여 동별로 엘리베이터의 지하 정차층 표시가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도서를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가 반영된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 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은 오직 충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 충전 점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 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 부의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시설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조경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 복리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 및 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으로써,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선형, 바닥 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 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 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 분에 감긴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옹벽 및 레벨 차로 인한 경사지 형성으로 인해 일부 인접 구간은 조경 활동 공간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서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카탈로그,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 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서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카탈로그,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 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의 변경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견본주택 및 홍보물에 게재된 특정 시설물(놀이터, 쓰레기 수거장 등 혐오 시설)의 위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면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 자문 및 시공 과정상 일부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 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색채,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변경 동의서의 법적 동의 수량 미달 시 외관 개선은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 디자인 (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 장식물, 물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 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 복리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 출입구, 지하 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계약자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외장재는 저층부는 석재가 시공되나 계단실과 승강기 홀로 구성된 코어 부분은 뿔칠 형태의 도장이 적용됩니다. • 각 주동별 외장 석재 적용 층수는 인접한 데크 부분 계획에 의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도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 홈 IoT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등 계약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사(ex:태양광발전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계약자의 유지관리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주민들을 위한 홈 IoT는 스마트싱스의 모바일 APP이 제공되며 무료로 운영되며, 서비스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건물주택 영상의 IoT 기능은 삼성전자외의 모든 옵션을 적용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제작된 것으로 계약자의 IoT 적용 제품의 소유 여부에 따라 각각 상이하므로 해당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 IoT 기능은 현대통신의 홈네트워크서비스와 홈 IoT 가전을 통합으로 사용 가능한 스마트싱스를 모바일에 설치 시 이용 가능하며 사용제품은 IoT 가능 제품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제품 제원은 삼성전자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 GPS, Bluetooth, 위치 권한, 원패스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양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타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 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 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TK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 과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소방내진 법규에 따라 위생, 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 단지 내 입주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동 및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은 84A, 123A 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동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 표현의 재료는 블록 포장으로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되며, 단지 모형의 조 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 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출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분양홍보물,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때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미포함 사항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벽 패널, 브라켓 및 펜던트 조명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외됩니다. •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뿐 아니라 추가 선택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홈페이지 VR 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분양 홈페이지상의 전시 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 및 단위 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 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 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 모형 등)과 공급 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및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카탈로그,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 배치도, 이미지 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 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 결과, 각종 평가 심의 결과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 홈페이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XI

기타 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사이버 견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주택 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자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자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자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자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및 옵션금액 등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자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자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	해당사항 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 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계약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Ⅶ)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Ⅶ-0.216g

공동주택 성능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공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대전 도안 2·3지구 특별재난지역 공동주택

2. 신청 자 : JH건설주식회사

3. 대외 계약 : 대안개발(주)에 용역구 공동주택 2건에 계약(주)한계계약서 제 22.28B.1.

4. 성능 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단열 관련 등급	나. 방음 관련 등급	참고사항
1. 방음성능등급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방음성능 : 1등급
2.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3.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4.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5.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6.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7.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8.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9.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10. 소음 차단 성능 : 1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단열 관련 등급	나. 방음 관련 등급	참고사항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단열 관련 등급	나. 방음 관련 등급	참고사항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단열 관련 등급	나. 방음 관련 등급	참고사항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1. 단열성능 : 1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2. 단열성능 : 2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3. 단열성능 : 3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4. 단열성능 : 4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5. 단열성능 : 5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6. 단열성능 : 6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7. 단열성능 : 7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8. 단열성능 : 8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9. 단열성능 : 9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10. 단열성능 : 10등급

※ 방음관련 조성 시험결과, 제16호, ※녹색건축 인증관련 시험결과, 제1호 및 주문명, 제28호

가에 따라 관련 공공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크리비츠인하우스

CREDIT.COM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 TEL. (02)2009-3612 | FAX. (02)2009-3629

[illegible]

보증대상 제외사항
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제 01292022-101-0011000 호	676,697,770,000	임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을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공동주택 공사 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 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구조감리
상호	(주)포스코에이앤씨	상지이앤씨(주)	(주)한빛안전기술단	(주)도화기술
금액	3,380,052,000원	1,123,232,682원	1,038,000,000원	200,000,000원

관리형 토지신탁

"본 사업"은 사업주체 겸 위탁자인 (주)부원건설과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주) 및 시공사인 (주)부원건설, 우미건설(주) 등 간에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함.

- 제1조(우선적용) 본 특약사항은 본 계약서 모든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조(관리형토지신탁 등)
- ① “분양대금수납계약”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수분양자(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시점”에, 코리아신탁(주)는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부원건설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매수인)는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③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④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주)부원건설, 우미건설(주)”에게 있다.
- ⑤ “매도인 겸 수탁자 코리아신탁(주)”는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⑥ 위탁자 겸 수익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

위약금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 겸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 2.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⑦ 코리아신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시공사, 매수인 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타(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제3조(설계 및 시공의 변경) 본 건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을”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4조(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본 계약에 관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미이행에 따른 제반 비용과 손해는 매수인(수분양자)이 부담한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상호	코리아신타(주)	(주)부원건설	우미건설(주)	(주)부원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10층(대치동,해성2빌딩)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5층(오류동, 중도일보빌딩)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44, 2층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5층(오류동, 중도일보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200111-0027065	205211-0001385	200111-0027065

※ 다음의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분야별 유의사항

- 본 단지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때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 시행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위탁자,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분양 관련 문의

대표번호	건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42-541-1009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https://ddt.lynn.co.kr/	-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분양대행사	삼일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6, 18층 1801호 (역삼동, 역삼 아르누보씨티)	134211-004532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도안 우미린 트리셰이드 건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운영기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건본주택 방문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방문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